



강 남 구 의 회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의회사무국 감사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치구 집행기관의 장이 자치구의회 사무국의 감사실시와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지방자치법 제92조 1항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독은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규정으로 판단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된 자체감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자치구의회가 포함되는지 해석이 모호함
- 그러나 집행기관의 장은 자치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실시 근거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예산, 회계 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통보해 옴
- 따라서, 집행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실시에 대한 근거로 행정자치부 등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이 아닌 상위법령 등에 기초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무엇인지) 여부 또는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의견(유권해석)이 옳은 법적판단인지 여부

붙임 1. 강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끝.

강 남 구 의 회 의 장

주무관 **이호병** 의정팀장 **홍남기** 구의회사무국장 전결 04/18
이동호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4387 () 접수 ()
우 06288 강남구 삼성로 154 /
전화 02-3423-8102 /전송 02-3423-8926 / lhbnet@gangnam.go.kr / 부분공개(7)